의안번호	2516

칠곡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16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. 5. 26.

나. 제 출 자: 칠곡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3. 5. 31.

라. 상정일자: **제292회**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(2023. 6. 16. 상정·심사·의결)

2. 제출설명의 요지(제출설명자: 교통행정과장 이종구)

가. 제출이유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 사전 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 등 군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1)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상위법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- 밤샘주차: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

2)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노상주차장, 노외주차장, 부설주차장에 대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 가능

3. **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정규)**

○ **「칠곡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」은**
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화물차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과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,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**질의 및 답변요지:** 생략

5. **토론요지:** 특이사항 없음

6. **소수의견:** 특이사항 없음

7. **심사결과:** 원안가결